

생애최초 주택취득 예외조항 (지특법36조의3③)

1. **상속**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
 2. 도시지역 외의 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소유자가 소재지역에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
(해당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로 한정)
*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, 85㎡이하인 단독주택, 상속주택
 3. 전용면적 20㎡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
※ 다만, 20㎡ 이하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한 경우는 제외
 4.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
 5.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
 6. 제1항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(수도권)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제1 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
-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.